

외래 출강에 관한 규정

제정 1996. 04. 03.
제8차 개정 2019. 07. 17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외래출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외래출강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본 대학교 이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학술이나 직무훈련 등 교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의 교육을 담당함을 말한다.

제3조(허가기준) 외래출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만 허가한다.

1. 외래출강의 주당 환산 시간수가 학기당 5시간 이하이며, 연간 9시간 이하일 때. 다만, 대학원 강의와 특별한 경우에는 연간 15시간까지 가능하며, 이 경우 학기당 9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. (개정 2007.1.29)
2. 본 대학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(개정 2007.1.29)
3. 교원으로서 사회적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(개정 2007.1.29)

제4조(허가) ① 본교 외의 대학교에 출강하고자 하는 교원이 공개채용등 채용절차에 지원하는 경우, 지원하기 이전에 **외래출강허가원**(별지 제1호 서식)을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단, 대학교가 아니거나 별도의 채용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② 제1항에 따라 대학교 출강을 허가 받은 교원은 외래출강이 확정된 경우 출강 시작일 2주 전에 **외래출강현황표**(별지 제2호 서식) 및 전임교원 강사출강 겸직허가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한 후 소속 대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개정 2004.11.23., 2018.05.17., 2019.06.25.)
[전부개정 2019.07.17]

제5조(외래출강 금지자) 책임시간이 감면되는 보직교원과 책임시간에 미달되는 교원은 외래출강을 할 수 없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. (개정 2002.2.6)

제6조(무단 출강자 조치) 허가 없이 무단 외래출강한 교원에 대해서 총장은 1차로 경고하고 차후 재발 시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0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937, 2004.11.23)

이 규정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과-105, 2007.1.29)

이 규정은 2007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6, 2015.01.05)

이 규정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부-270, 2018.05.17)

이 규정은 2018년 0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기획예산팀-375, 2019.07.17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0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4조(허가)는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.

별지1호 서식(개정 2015.01.05., 2018.05.17.)

외 래 출 강 허 가 원

대학 :

학과 :

직급 :

성명 :

보직명(해당자만 기재) :

1. 출강기관명 :

2. 출강기관 주소 :

3. 출강 중 비상연락 전화 :

4. 출강기간 :

5. 강의과목 :

6. 강의요일 및 시간 : ()요일 (-), ()요일 (-)

7. 외래출강시간 : 총 ()시간 주당 환산시수 ()시간

8. 학부 및 대학원 주당 담당시간

1학기						2학기						총 시수									
학부			대학원			외래출강			학부			대학원			외래출강			외래 출강	학부	대학원	총계
주당 시간	담당 과목	요일 및 교시																			

* 외래출강의 주당 환산 시간수가 학기당 5시간, 연간 9시간 이하이며, 교내·외 총 수업시간이 연간 34시간 이하일 때, 다만, 대학원 강의와 특별한 경우에는 연간 15시간까지 가능하며, 학기당 9시간까지 허가

위 본인은 위와 같이 외래출강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. . .

위 원 인 :

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

【별지 제2호 서식】 (신설 2019.07.17)

외 래 출 강 현 황 표

경 유	학 장
--------	-----

단 대 명		학과(부)	
직 급		성 명	
보직명 (해당자만 기재)			

1. 출강기관명 :
2. 출강기관 주소 :
3. 출강 중 비상연락처 :
4. 출강기간 : 20 . . . ~ 20 . . .
5. 강의과목 :
6. 강의요일 및 시간 : ()요일 (-),
()요일 (-)
7. 외래출강시간 : 총 ()시간 주당 환산시수 ()시간

붙임 1. 전임교원 강사출강 겸직허가 신청서 1부.

2. 계약서 사본 1부. 끝.

20 . . .

신 청 인 : 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

【별지 제3호 서식】 (신설 2019.07.17)

전임교원 강사출강 겸직허가 신청서

인적사항	성명		생년월일	
	소속		직위(급)	
겸직 (출강) 사항	겸직(출강) 기관명			
	겸직(출강) 신청기간			
	겸직(출강) 요일/시간			

위와 같이 겸직(출강)함에 따라 본교 연구와 강의에 소홀함이
없도록 할 것이며,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겸직을 취소하여도 이의
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, 겸직(출강) 허가를 신청하오니
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 : (인)

상지대학교 총장 귀하